

의안번호	2206971
의 퇴 인	이종배 의원
회 답 일	2025.2.17.
추계번호	24C6286
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0조의12 (도농 복합형태의 시 교원에 대한 주거 지원)	(제1항)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0조제2항1)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 근무하는 교원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거 지원을 할 수 있음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60조의12 (도농 복합형태의 시 교원에 대한 주거 지원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도농 복합형태의 시(이하 “도농 복합시”)에 근무하는 교원에게 주거 지원을 하는 경우 국가재정 또는 지방교육재정의 지출이 증가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1) 「지방자치법」

제10조(시·읍의 설치기준 등) ① 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.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도농(都農) 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.

1.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
2.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
3.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 인구가 5만 이상인 군. 이 경우 군의 인구는 15만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4. 국가의 정책으로 인하여 도시가 형성되고, 제128조에 따라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인구가 3만 이상이며, 인구 15만 이상의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일부인 지역

- 교육부는 2016년 도서·벽지에 근무하는 교사의 안전한 주거 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재정으로 통합관사 신축 예산을 지원하였는데²⁾, 도농복합시 교원에 대해서도 교육부 예산으로 주거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국가의 재정 지출이 증가
- 또한,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시·도교육청의 예산을 통한 주거 지원(지방 교육재정 지출)이 확대되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

□ 그러나 도농복합시 교원의 주거 지원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분은 개정안에 따라 추가로 주거 지원 대상이 되는 교원의 수와 지원단가에 따라 결정되는데, 현재 이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부족하고 주거 지원의 기준·범위 등도 알 수 없으므로 합리적인 가정을 통해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
- 도농복합시(2024년 기준 총 56개) 근무 교원의 거주지나 통근 현황 등을 고려하여 주거 지원이 필요한 교원의 수를 추출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, 시·도교육청별로 관사 입주 자격 등 지원 기준 또한 상이하여 기존에 주거 지원을 이미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교원의 수를 세부적으로 알 수 없음
- 주거 지원 방법으로는 관사 등을 통해 주거 공간을 직접 제공하는 방법, 지역 내 주택을 임차하는 데 필요한 보증금·전세금을 저리 또는 무이자로 대부하거나 월세액을 지원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, 각 방법별로 비용 발생의 유형과 규모가 상이하므로 가정에 따라 지원단가가 달라질 수 있음³⁾
- 개정안에 따른 주거 지원 방법이나 범위 등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세부적인 지원 내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, 시·도교육청의 정책 방향,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지원 방법 및 투입 예산이 상이하기 때문에 지원단가를 일률적으로 가정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
2) 2016년 안전에 취약한 도서·벽지의 단독 관사를 학교, 보건진료소, 우체국 직원 등이 함께 쓰는 관사(통합관사)로 전환하는 등 통합관사를 신규 확충하는 것을 골자로 함. 이에 따라 국가재정으로 총 1,218억원(국고 25%, 특별교부금 75%)이 지원되어 경기도 연천군, 강원도 횡성군 등 30개 시·군·구에 총 900세대가 입주 가능한 통합관사 75동이 신축됨

3) 관사 신축을 지원하는 경우 건축비와 함께 건물 관리에 필요한 유지보수비 등이 지원단가에 포함될 것이며, 구체적인 규모는 관사의 수용 인원 및 신축 지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. 보증금·전세금의 대부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 금액에 대한 이자비용 등이 지원단가에 포함될 것이며, 이자비용 발생 규모는 이자율 및 지원 한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,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강시온	이진우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강시온	02-6788-4742	sionkang@nabo.go.kr